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상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6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6.

발 의 자 : 이상식 · 임호선 · 이병진
이강일 · 김문수 · 이재관
허종식 · 박정현 · 문진석
염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(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정한다)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3년간 경감하여 주고 있음.

그런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20~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로,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부담도 장기적으로 지속됨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 후 3년까지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.

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8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8항 본문 중 “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”을 “소유권”으로, “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”를 “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1조(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) ① ~ ⑦ (생략) 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 립형 분양주택(이하 이 항에서 “지분적립형주택”이라 한다)으 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<u>2025년 1월 1일</u> <u>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</u> <u>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</u> <u>되는 경우 해당 주택(공공주택</u> <u>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)</u> <u>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</u> <u>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</u> <u>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</u> <u>경감한다.</u> 다만,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주 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.	제31조(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소유권----- ----- ----- -----재산세의 100분의 <u>2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</u> <u>감한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.